



수 원 지 방 법 원

제 8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노4199	업무상배임
피 고 인	A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민정(기소), 이성화(공판)	
변 호 인	범무법인(유한) F	
	담당변호사 G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2. 12. 선고 2012고단963 판결
환송 전 당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37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1876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0. 1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3,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몰수를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고, 업무상 배임 부분에 관하여는 환송 전 당심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반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행위 및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 중 업무상 배임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으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환송 전 당심판결 중 검사의 상고가 기각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취득한 별지 '중요 영업비밀 일람표' 기재 파일들(이하 '이 사건 영업파일들'이라고 한다)은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영업파일들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한편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



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배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0. 3. 22.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한다)에 임원(그룹장)으로 입사하여 태양전지 스퍼터 장비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2. 2. 29. 퇴사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0. 3. 22. O에 입사하면서 "본인은 회사의 분명한 승인 없이 회사의 기밀을 어느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을 것이고, 회사와의 고용계약이 종료할 경우 즉시 회사에 회사의 정보와 재산을 모두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및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회사 업무와 관련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것이며,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고, 일체의 정보저장장치 또는 정보처리장치를 회사 안에 반입하는 행위, 회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회사 안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 회사로부터 명시적인 승인을 얻을 것이며,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정보자산 및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고, 퇴직 후에도 퇴직 전 지득한 영업비밀, 특허 등의 기술,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 등을 각 작성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1. 6.경 O의 승인 없이 개인용 외장하드를 회사 안으로 반입하여 O의 기술상 정보 및 경영상 정보 관련 파일들을 개인용 외장하드에 저장한 것이 적발되어 경고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2012. 2.경 퇴사 무렵까지 계속 O의 승인 없이 개인용 외장하드를 회사 안으로 반입하여 이 사건 영업파일들을 개인용 외장하드에 저장한 다음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④ 피고인은 2011. 10.경 O에 스퍼터 또는 세정기 장비의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 업체인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의 부사장인 원심 공동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영업파일들 중 96개 파일을 저장한 개인용 외장하드를 교부하였고,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영업파일들 중 연번 1, 2번 파일을 문서명의자만 'Q'로 변형하여 2011. 10.경과 같은 해 11.경 5회에 걸쳐 중국의 R 관계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였으며, 피고인, D, 원심 공동피고인 B은 2011. 12.경 중국을 방문하여 R 관계자들을 만나 태양광 장비 관련 사업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⑤ 한편 피고인은 2012. 2. 말경 O을 퇴사하면서 이 사건 영업파일들을 저장한



개인용 외장하드를 O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퇴사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O의 임원인 피고인이 재직 중 위와 같이 O의 승인 없이 이 사건 영업파일들을 개인용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보관하다가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하고 퇴사 후까지도 반환·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한 것은 보안서약서 등에 위배된 행위로서 이 사건 영업파일들의 내용에 따라서는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② 이 사건 영업파일들의 반출 및 퇴사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향후 이 사건 영업파일들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파일들 중 일부가 O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피고인이 O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위 일부 영업파일들을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하고 퇴사 후까지 이를 계속 보관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며, 피고인이 O의 임원으로서 그 권한에 의하여 이 사건 영업파일들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영업파일들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① 연번 1번 파일은 결정질 방식의 PE-CVD¹⁾ 장치에 태양전지 등을 만드는 기판인 웨이퍼(wafer)를 싣고 내리는 자동화 장비에 관한 것이고, 연번 2번 파일은 O이 고객사인 프랑스 AD에 납품한 태양전지 생산장비 자동화 장비 라인의 배치도 및 각

1)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층을 도포해 주는 화학적 증착 장비



생산 공정별로 웨이퍼를 이동시키는 장치들에 관한 것인데, 연번 1번 파일은 연번 2번 파일의 하나의 구성부분이다. 위 파일들의 내용은 자동화 장비 구성부분들의 사진을 제시하고 그 명칭과 기능을 설명한 것이거나 구체적인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대략적인 도면들이고, 배치도 역시 개괄적인 것에 불과하여 이를 취득함으로써 어떠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연번 3~27번 파일은 스퍼터링²⁾ 장비에 관한 것으로서 O의 협력업체들이 관여하여 설계한 것인데, 스퍼터링 장비 전체 개요에 관한 개괄적인 자료이거나, 스퍼터링 장비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에 관한 설계도여서 이를 취득함으로써 어떠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연번 28번(웨이퍼 공급장치에 관한 자료), 연번 32번(광 침투 시스템 개발보고서), 연번 38, 60번(태양전지 전체 배치도 및 설명자료), 연번 40, 41번(프랑스 AD의 요구조건에 따른 시방서), 연번 51번(결정질 태양전지 라인 장비 소개서), 연번 53번(셀 라인 전체 배치도), 연번 62번(콘티북), 연번 65번(프로세스 셋업 계획서), 연번 70번(장비 배치도), 연번 75번(OEM 장비 제작업체가 제공한 모듈 정리자료), 연번 77번(PE-CVD 제작 사양서), 연번 78, 79번(중국 AY에 납품한 장비의 전체 배치도), 연번 89번(새로운 컨셉의 PE-CVD 장비 개념도), 연번 91번(TFT 제조공정 컨셉 자료), 연번 96, 97번(장비의 유틸리티 및 전기배선 개요도) 파일은 모두 그 내용이 개괄적이어서 이를 취득함으로써 어떠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연번 36번 파일은 구매제안서로서, 제시되어 있는 반도체 칩 자체 구조는 이미 공지된 것이고, 나머지 자료는 개괄적인 것에 불과하여 이를 취득함으로써 어떠한 경쟁상 이익을 얻을

2) 스퍼터링 현상을 이용하여 층을 도포해 주는 물리적 증착 장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연번 29, 30번 파일은 중국 AY에 납품한 태양전지 박막라인 글라스 자동이송 로봇에 관한 것인데, 해당 로봇을 운영하다가 발생하는 작동 오류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다. 해당 로봇은 미국에서 구입한 제품이기는 하지만, 운영시 발생하는 작동 오류 및 해결방안은 위 로봇을 도입하려는 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O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⑤ 연번 31번 파일은 솔라셀 라미네이터 디자인 진행상황 자료로서, 구체적 수치를 포함한 테스트 조건 및 결과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O이 위 기술 개발을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실패한 개발 자료도 경쟁사가 취득할 경우 시행착오를 단축하는 등의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O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⑥ 연번 33번 파일은 웨이퍼 텍스처링 실험자료로서 구체적 수치가 기재되어 있다. 비록 OEM 장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장비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한 실험결과이며, 웨이퍼 텍스처링은 태양전지 셀 생산 시 가장 먼저 하는 중요한 공정이므로, 중간실험결과라 하더라도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로서 O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⑦ 연번 34번(AZ에 납품한 PE-CVD의 챔버 뚜껑 변형에 관한 문제점과 상세 데이터 수치 기재), 연번 35번(BA에 납품한 초기 태양전지 라인의 운영 레시피와 그에 따른 생산결과 사진 첨부), 연번 37번(중국 BB에 납품한 PE-CVD의 고객 교육훈련용 자료), 연번 55, 56번(BC에 납품한 장비의 디자인과 설계에 관한 자료) 파일은 O이 해당 기계를 위 각 회사에 납품함으로써 공개되었는데, 이를 납품받은 각 회사와 비밀유



지협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비공지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연번 48, 49, 50번 파일은 협력업체가 작성한 원부자재 선정 및 시험결과 자료로서 BC에 보고되었고, 연번 86번 파일은 BIPV 상세 레시피로서 중국 AY과 공유되었는데, 마찬가지로 O이 위 각 회사와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비공지성이 상실되었다. 또한 연번 74번 파일은 OEM 장비의 초기 공정 테스트 자료로서 텍스처링 공정 레시피인데, O이 이를 공유한 협력업체와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비공지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⑧ 연번 39번 파일은 프랑스 AD의 상황을 가상하여 위 회사에 제공한 레시피 자료로서, 레시피는 반도체 장비기술의 핵심이며 이를 토대로 현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고, O이 위 회사와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 비공지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O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⑨ 연번 42, 76번(고객사에 납품된 장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 연번 59번(BC에 제공된 장비 공통 사양서), 연번 63, 64번(고객사에 납품한 PE-CVD 챔버 및 뚜껑 조립도), 연번 67번(공장 내부 장비를 촬영한 동영상), 연번 73번(고객사에 제공되는 PE-CVD 장비 매뉴얼), 연번 80, 81, 82, 83번(챔버 조립도), 연번 101번(품질관리 체크리스트), 연번 106번(신입사원에 대한 PE-CVD 교육자료) 파일은 그 내용이 일반적이어서 업계에 이미 알려져 있거나 납품한 기계의 외관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이를 취득함으로써 어떠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⑩ 연번 43, 44, 45번(고객사에 출장을 가는 직원을 위한 장비 셋업 및 운영교육 자료), 연번 46번(고객사의 워크숍에서 사용된 자료), 연번 71번(고객에게 솔라셀을 설



명하는 자료), 연번 95번(장비 운영을 위한 엔지니어 교육자료) 파일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교부되었거나 소개를 목적으로 제작한 자료이고, 연번 72, 87, 88번(Best Known Method 레시피) 파일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비공지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⑪ 연번 47, 52, 54번 파일은 장비 구매를 위한 입찰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받은 견적가격을 기재한 자료로서, 입찰 당시로부터 1년 8~10개월이 경과하였고, 연번 68, 69번 파일은 2011년경 장비 원가 및 제조원가를 분석한 자료로서 위 파일들의 반출 및 피고인의 퇴사시점까지 여전히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연번 90번은 파일은 MO-CVD³⁾ 장비 개조를 위한 개발 초기단계 자료이고, 연번 94번 파일은 자동화 장비 개발 초기단계 자료이며, 연번 103번 파일은 2010년 당시 장비별 구매원가 상승 현황을 분석한 자료인바, 2년 반~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여전히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⑫ 연번 57번(장비 세척기구와 부품에 관한 자료), 연번 58번(턴키 라인에 사용되는 원료가스 등 유틸리티의 예상 소모량 자료) 파일은 장비에 관련된 부수적인 정보에 불과하여 그 중요도가 높지 않은바, 이를 취득함으로써 어떠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⑬ 연번 61번 파일은 원부자재인 글라스의 제조사별로 성능을 실험한 결과 자료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정보를 취득할 경우 어느 제조사의 글라스를 사용하면 되는지 알 수 있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⑭ 연번 66번 파일은 LG전자에 납품한 장비의 레시피로서, 실험을 통해 도출된

3) 유기금속을 이용하여 층을 도포해 주는 화학적 증착 장비



상세 수치가 기재되어 있고 이는 장비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O이 LG전자와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 비공지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는 O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⑮ 연번 84번 파일은 중국 AY에 납품한 장비의 부품리스트로서, AY에 전달되었는데 O이 AY과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O이 해당 부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파일을 만드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⑯ 연번 85, 100번 파일은 프리히팅 챔버 디자인에 관한 것으로서 문제점에 따른 디자인 구조 변경 방안 및 변경된 디자인에 따른 테스트 결과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데, 챔버가 중국 AY에 납품됨으로써 챔버 디자인 자체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디자인에 따른 테스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고, 이는 O 제품의 성능 및 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⑰ 연번 92, 93번 파일은 고객사에 납품한 장비의 디자인 리뷰자료로서, 장비가 납품되면 외관을 관찰함으로써 그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므로 비공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⑱ 연번 98번(장비 평가항목 및 등급기준 자료), 연번 99번(장비 생산일정표) 파일은 이를 취득함으로써 어떠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경영상 자료인 연번 102번(BD 설립안), 연번 104번(경영목표 달성 방안 및 비상경영관리 전략), 연번 107번(마케팅 전략 자료) 파일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업무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⑲ 연번 105번 파일은 협력업체 연락처로서, 해당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업무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다음으로, 재산상의 손해 및 이득의 점에 관하여 보면,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고(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업파일들 중 일부가 O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반출 혹은 미반환·미폐기하는 경우 그 자체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이고 그로써 피해자에게는 적어도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피고인이 2011. 10.경 이 사건 영업파일들 중 연번 30, 31, 33, 39, 61, 85, 100번 파일을 D에게 교부하고, 2012. 2. 29.경 O에서 퇴사하였음에도 위 파일들을 비롯한 연번 29, 66번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고, 위 연번 29, 30, 31, 33, 39, 61, 66, 85, 100번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영업파일들 전부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2.경 LCD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전지 등 제조장비 생산 전문업체인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0. 5. 31.경까지 PVD 그룹 그룹장으로 근무하며 태양전지 스퍼터 장비 개발업무를 총괄하였고, 2010. 6. 1. 경부터 2010. 10. 9.경까지 OEM 개발그룹 그룹장으로 근무하며 태양전지 관련 협력업체 주문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10. 10.경부터 2011. 7. 31.까지 PVD 개발 그룹장으로, 2011. 8. 1.부터 2012. 2. 29.까지 P팀 그룹장으로 근무하며 미국 회사와 태양전지 기술제휴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2. 29.경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2. O에 입사하면서 "나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회사 업무와 관련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것이고, 일체의 정보저장장치 또는 정보처리장치를 회사 내에 반입하는 행위, 회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 회사로부터 명시적인 승인을 얻도록 하겠으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서 회사 영업비밀 등의 정보자산보호와 전자메일의 오남용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약하고 이를 사용시 회사의 각종 전자메일 사용 규정을 준수할 것이고, 퇴직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모든 정보자산 및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 지득한 영업비밀, 특허 등의 기술,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누설치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O의 영업



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복제, 공유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9.경부터 2012. 2.말경까지 직접 파일의 암호를 해제하거나 B, E으로부터 송부받아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O의 별지 중요 영업비밀 일람표 기재 107개 파일을 취득한 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2011. 10.경 수원시 영통구 T건물 101동 902호에 개설한 Q 수원사무실에서 D에게 위 파일 중 7개(연번 30, 31, 33, 39, 61, 85, 100번)를 교부하고, 2012. 2. 29.경 O에서 퇴사하였음에도 위 파일들을 비롯한 연번 29, 66번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⁴⁾

이로써 피고인은 O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O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약서, 보안서약서, 퇴직서 등

1. A의 노트북 PC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A 회사 PC 캡처 화면

4) 이 부분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1. 9.경부터 2012. 2.말경까지 O의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하고, 2011. 10.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그 일부를 외국으로 누설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O에 근무할 당시 별지 중요 영업비밀 일람표 기재 각 파일을 취득한 후 2011. 10.경 D에게 일부 파일을 교부하고, O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환송 후 당심에서 이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도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1. 각 수사보고(A, B 사직원, 보안서약서 각 1부, A 시말서 등 첨부, A 외장하드 백업본 정리자료 첨부, A 외장하드 백업본 출력물 별책 첨부, 피의자 D 압수물 중 외장하드 및 USB 내 파일 출력물 첨부, O과 협력사 간의 비밀유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취득·누설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O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출 또는 폐기하지 아니한 파일 중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파일이 소량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O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복제, 공유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9.경부터 2012. 2.말경 까지 O의 별지 중요 영업비밀 일람표 기재 107개 파일을 취득한 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2011. 10.경 수원시 영통구 T건물 101동 902호에 개설한 Q 수원사무실에서 D에게 위 파일 중 89개를 교부하고, 2012. 2. 29.경 O에서 퇴사하였음에도 연번 29, 30, 31, 33, 39, 61, 66, 85, 100번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O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송승우 _____

 판사 이소진 _____



.
: 2018-12-03

판사 권민영 _____



: 2018-12-03

중요 영장비밀 일람표

번호	영장 종류	영장 내용	제정 법률	비밀 등급	유기등급
1				결정일 해당 전지	대외비 1등급
2				핵심조직 설립 프로세스 전략	대외비 1등급
3					대외비 1등급
4					대외비 1등급
5					대외비 1등급
6					대외비 1등급
7				핵심 역량 전지를 담은 스페셜 장비	대외비 2등급
8				핵심 역량 전지 제조 장비 및 [] 등 [] 업체와의 같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장비 기술로 A 후의 2까지 모든 도면이 총괄되어 있어 장비 제조 기술은 물론, [] 및 [] 부장들이 같은 관여 하여 여러 의견과 아이디어를 낼 장비 이지만 많은 부분 [] 직할에 의해서 이루어 진 부분이며, 또한 [] 의 지적 재산권임	대외비 1등급
9				유물 서구 3천여점의 경제적 손실 예상 함.	대외비 1등급
10					대외비 1등급
11					대외비 1등급
12					대외비 1등급
13					대외비 1등급
14					대외비 1등급
15					대외비 1등급
16					대외비 1등급
17					대외비 1등급
18					대외비 1등급
19					대외비 1등급
20				고효율 결정일 해당 전지를 담은 스페셜 장비	대외비 1등급
21				고효율 결정일 해당 전지 제조 장비 및 기타나로 장비를 완벽하게 제조 가능한 수준의 모든 도면임.	대외비 1등급
22				[] VP: [] 부장이 많은 부분 관여하여 아이디어 및 의견을 낼 장비 이지만 [] 과 많은 설계/운영 인원이 관여하여 많은 도면 풀이도, 모든 도면 권 [] 의 자산임	대외비 1등급
23				국내외 통틀 시 향후 2-3천여점의 경제적 손실 예상함.	대외비 1등급
24					대외비 1등급
25					대외비 1등급
26					대외비 1등급
27					대외비 1등급
28				결정일 PECVD automation 관련 자료	대외비 2등급
29				핵심 역량 전지 원기	대외비 1등급
30				대외 [] 자체 지적 재산은 아니지만 핵무 해당 전지 원기 공정을 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장비들임 [] 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검토/선	대외비 1등급



: 2018-12-03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62				Display (LCD 등)	대외비 1등급
63				RECYD의 상부 및 하부	대외비 1등급
64				박막 태양 전지	대외비 1등급
65				박막 태양 전지	대외비 1등급
66				활물질 태양 전지	대외비 1등급
67					대외비 1등급
68					대외비 1등급
69					대외비 1등급
70					대외비 1등급
71				고효율 태양 전지 셀	대외비 1등급
72					대외비 1등급
73					대외비 1등급
74					대외비 1등급
75					대외비 1등급
76				활물질 태양 전지	대외비 1등급
77				활물질 태양 전지	대외비 1등급
78					대외비 1등급
79					대외비 1등급
80					대외비 1등급
81					대외비 1등급
82				박막 태양 전지, 필러 기술 및 액정	대외비 1등급
83				박막 태양 전지, total solution, 광변 기술, 자외선 및 광변의 recipe, 광변 구성 방법, 무정리터, 내열, 필러, 운영, 필립 문제점 및 이오, 대책을 박막 태양 전지 공정을 간접 운영하는 거의 모든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시 향후 5년간 다 2 조원의 피해 예상	대외비 1등급
84					대외비 1등급
85					대외비 1등급
86					대외비 1등급
87					대외비 1등급
88					대외비 1등급
89				활물질 태양 전지	대외비 1등급
90				Display(CD/OLED)	대외비 1등급
91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세대 Display(OLED)	대외비 1등급
92				Display(OLED)	대외비 1등급
93				Display(OLED)	대외비 1등급



: 2018-12-03

연번	영역	연구분야	연구내용	연구성과	연구수준	
94	경연상 정보			박막 제형 편지 기술	대외비 1등급	
95					대외비 1등급	
96					대외비 1등급	
97				반도체 핵심 장비인 <input type="checkbox"/> 장비의 동부 자회사의 <input type="checkbox"/> 장비의 진화/개선 구 성을 할 수 있는 자료	대외비 1등급	
98					대외비 1등급	
99					대외비 1등급	
100					박막 제형 편지	대외비 1등급
101					장비 생산 기술 (용접)	대외비 1등급
102					핵외조각 실험 프로세스 개발	대외비 1등급
103					장비별 구매/유지/운영(시행) 관련 전략 중요자료	대외비 1등급
104		비상정밀분석 및 계층별 수송/회전성 및 예산 전략	대외비 1등급			
105		전략업체 관리 및 담당자 리스트	대외비 1등급			
106		핵심경영 기술 교육 자료	대외비 1등급			
107		MOXD 시험분석 및 대인 시험 대개 통 전략	대외비 1등급			